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 ('20.6.23)
- ② 2020년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20.6.22)
- ③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20.6.10)
- ④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수위 높아진다. ('20.6.11)
- ⑤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20.5.27)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

6월 23일 국무회의 의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

(2020. 6. 23,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곧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 '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새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안이 금지하고 있는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20년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 민생침해 범죄 및 온라인 불공정 행위 등 논의 -
- "공수처 다음 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
- "반부패 노력, 집권 후반기에 더 중요...끝까지 최선" -

(2020. 6 22, 국민권익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국가별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회의 안건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 수의계약 전산 등록 의무화,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개선 권고 -

(2020. 6. 10, 국민권익위)

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 및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등의 사규 관련 부패 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직원 복지 관련(5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 총 18개 유형의 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가 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총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 신고자 보호 강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

(2020. 6. 11,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

(2020. 5. 2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2018년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1기 협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협의회 첫 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제2기 협의회 민간의장에는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제1기 협의회에 이어 김병섭 의장이 연임하게 됐다.

먼저 협의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해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사권을 갖춘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두는 한편,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 방법 등 중요사항은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은 “국민들은 제21대 국회의 윤리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